

외국의 축산업 규제 사례

농림부

1. 유럽연합

• 축산업 정책적 규제는 먼저 환경보존을 위해 출발하여

- '90년대 후반들어 광우병, 구제역 등의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안전성 관리강화 등을 위해 확대되어 옴.

• 주요 규제사항은 농가 등록·허가 실시,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분뇨발생량 제한, 가축의 출생·이동·판매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 및 처분제한 등임.

- 돼지·닭의 경우 농가단위, 소는 개체까지 식별체계 구축

• 가축사육밀도를 낮추는 경우 직접지불금을 지급

- 사육밀도가 ha당 1.4가축단위 미만일 경우 보조금 지급(100ECU)

<국가별 사례>

① 네덜란드

• '70년대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

- '50년 처음 개체색별제도 도입후 '70년대 모든 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'80년대 예방접종 등 등록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

• 가축분뇨발생량을 규제하기 위해 농가별로 농경

지면적, 가축두수, 가축의 품종 등 등록 실시

- '80년대 단위농지면적에 대한 분뇨 생산·사용 허용량 제한을 시작으로 '96년 이후 분뇨와 화학비료 등 모든 미네랄 공급요소를 포함하여 미네랄 허용량을 농가별로 제한

- 미네랄 사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과징금 부과

② 벨기에

• 모든 가축을 축생사에서 도축시까지 농장별, 개체별(소) 또는 집단별(돼지, 닭)로 전산등록 실시 (SANITEL)

- SANITEL에 미등록시 가축의 출하, 이동, 판매 등이 불가능함.

- 법정질병 감염시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
• 농가에서 돼지·닭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한 환경자격증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취득

- 가축분뇨·화학비료 사용량제한, 가족축산농사육규모 상한 설정

※ 사육규모 상한 : 젖소 100두, 육우 300두, 모돈 300두, 가금 70천수

③ 영국

• '98년부터 모든 소사육농가에게 소의 출생, 이

동, 도축사항 등을 기록·증명하는 PASSPORT 발급
- PASSPORT가 없는 경우 가축의 이동·판매·도축 제한

• 슬러리, 사일로 및 연료저장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규격 적합의무 부과 등 규제 실시

- 농가별로 질소비료 살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목초지 등 농경지면적에 따라 사육두수 규제 실시

④ 덴마크

• 6개월이상 분뇨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등 사실상 등록제 실시

-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시에는 허가 필요

• 농가별 축산분뇨살포 농경지 확보, 면적당 가축 사육두수 제한, 농경지 면적당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 사용량 상한 설정

※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: 모든 5.2두/ha, 비육돈 17.6, 젖소 2.3

⑤ 프랑스

• 대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허가제 실시

• 농가별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치, 가축분뇨생산기록부 보관 등 의무화

2. 대만(축목업 등기제)

• '97. 3월 구제역 발생이후 축목업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목업 경영자로 하여금 축산사업장을 등기토록 의무 부과('98. 8)

- 등기대상 :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지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

• 등기요건

- 농장책임자나 주요관리인은 직업학교 이상의 수의, 축산과를 졸업하거나, 정부에서 주관하는 훈련 과정을 수료(1개월이상)한 자 또는 2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험자이어야 함.

- 관련 법령규정의 제시기준에 부합되는 축분처리시설을 설치

• 등기절차

- 등기는 신청서를 구비하여 소재지 현·시에 신청·심사

- 주관기관은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후 자격을 갖춘 자에게 등기서 교부

※ 등기사항 변경시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 필요

• 기타 위생관리

- 축목장은 전담수의사를 두거나,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책임

• 벌칙

- 축목장 미등기, 변경사항 미등기 등의 경우에는 3만~9만원의 벌금 부과 C

